

January 07, 2015

미국의 “우크라이나 자유지원법” 발효 : 對러시아 무역 및 금융거래에 대한 영향

지난 해 12월 18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우크라이나 자유지원법(Ukraine Freedom Support Act, 이하 UFSA)”에 서명하였습니다. UFSA가 발효됨에 따라 서방의 對러시아 경제제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 제3국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가능성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촉발된 서방의 對러시아 경제제재는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간 對러시아 제재의 양대 축을 형성하였던 EU의 Council Regulation No. 833/2014(No. 960/2014 및 No. 1290/2014로 일부 개정) 및 미국의 대통령명령 13662호는 주로 러시아의 특정 개인 및 기업을 제재대상자로 지정하고, 그 제재대상자를 상대로 금지된 거래를 한 EU 또는 미국 국적의 개인 및 기업, 또는 제재대상자를 상대로 EU 또는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금지된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UFSA의 경우 미국이외의 제3국 금융기관이 제재대상자를 상대로 금지된 거래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미국 행정부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對러시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장 UFSA에 따른 제재를 시행할 계획은 없으나 향후 러시아의 태도변화에 따라 추가제재를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미국 행정부가 UFSA에 따른 추가제재를 적용하기로 결심할 경우 UFSA에 따른 제재는 그 제재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소급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對러시아 거래를 계획하는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UFSA에 따른 제재가 시행되는 경우, 예컨대 제3국 금융기관의 경우 미국 내에서 대리계좌(correspondent account) 또는 환계좌(payable-through account)를 개설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기 개설된 대리계좌 또는 환계좌를 유지함에 있어 엄격한 조건(strict condition)을 충족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UFSA를 위반한 제3국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데, 과징금의 경우 미화 25만 불 또는 문제가 된 거래금액의 2배 가운데 높은 금액 이하만이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반사항이 고의적인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미화 1백만 불 이하의 벌금, 그리고 자연인에 대해서는 2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금지대상이 되는 거래 및 당사자

UFSA 제4조 및 제5(a)조는 제3국의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미 행정부의 제재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1) UFSA에 따라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러시아 기업이나 개인, (2) UFSA에 따라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제3국 기업이나 개인, (3) 러시아의 주요 방산수출자인 Rosoboronexport 社, 그리고 (4) Gazprom 社(미 행정부에 의해 추후 UFSA에 따른 제재대상자로 지정될 경우)를 상대로 ‘유의미한 거래(significant transaction)’에 대한 ‘편의를 제공(facilitate)’한 제3국의 금융기관이 UFSA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UFSA에 따라 일반적인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러시아 또는 제3국 기업 및 개인이 존재하지 않고, Gazprom 社 역시 아직까지 UFSA에 따른 제재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Rosoboronexport 社와 거래하지 않는 한 UFSA 제4조 및 제5(a)조에 따른 제재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UFSA 제5(b)조는 특별히 제3국의 금융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제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UFSA, 미 합중국 대통령명령 제13660호, 제13661호, 제13662호, 기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미합중국 대통령명령에 의거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 제재대상자로 지정한 자를 상대로 ‘유의미한 금융거래(significant financial transaction)’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제3국 금융기관은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UFSA에 따른 제재의 소급적용 가능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차 미국 행정부가 UFSA에 따른 추가제재를 시행하는 경우 그 제재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행위도 소급적으로 제재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對러시아 거래를 계획하는 국내 기업과 이와 관련하여 금융을 제공하고자 하는 금융기관들은 예상치 못한 제재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UFSA 제5(a)조는 “UFSA 제정일 또는 제정일 이후에 이루어진 금지된 거래”를, 그리고 UFSA 제5(b)조는 “UFSA 제정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날 또는 그 날 이후에 이루어진 금지된 거래”를 각각 제재대상 거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금융기관이 UFSA에 의해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상대로 금지된 거래를 하게 될 경우 설령 그러한 거래가 미국 행정부가 UFSA에 따른 추가제재를 실제 이행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재대상 거래로 취급되어 UFSA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러시아와 거래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과 이러한 거래에 대해 금융을 제공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UFSA의 내용을 숙지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과 및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하면서 제재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김두식 대표변호사 | TEL. 02 316 4223 | E-Mail. dskim@shinkim.com |
| ● 이태림 러시아변호사 | TEL. 02 316 1727 | E-Mail. trlee@shinkim.com |
| ● 정하늘 미국변호사 | TEL. 02 316 1714 | E-Mail. hnjung@shinkim.com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